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67,200,000	32,016,000
일반회계	929,400,000	27,882,000
특별회계	137,800,000	4,134,000
공기업특별회계	64,100,000	1,923,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7,300,000	1,119,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6,800,000	804,000
기타특별회계	73,700,000	2,211,000
수질개선특별회계	5,091,000	152,73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901,000	87,03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889,000	26,670
주택사업특별회계	774,000	23,220
치수사업특별회계	16,856,000	505,68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7,377,000	221,310
대지보상특별회계	275,000	8,25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5,843,000	775,29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3,306,000	399,18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88,000	11,64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와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867,246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9,290,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577,246천원)